



“한국의 창을 열고 세계를 누벼라!”

SKIS 교육통신

Singapor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발행번호 230908- 호

대 상 : 유,초,중,고

담 당 : 중등 교무부장
이진우

문의처 : 6469 - 174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선생님은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2023. 9. 1.]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

1) 교사

- ▶ 수업방해 학생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키거나 교실 내 지정된 위치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어요
- ▶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 되지 않거나 근무시간 및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어요
- ▶ 학생에게 주의, 조인, 상담, 훈육·훈계할 수 있으며 불응학생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 ▶ 학부모에게 학생 문제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와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어요

2) 학생

- ▶ 수업 중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아요 (※ 수업에 활용 등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 제외)
- ▶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제지될 수 있어요
- ▶ 학칙 개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 ▶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존중해요

3) 학부모

- ▶ 상담 요청권과 상담 예약제를 통해 선생님께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 ▶ 수업방해 학생 분리 등으로 자녀의 안전한 교실과 학습할 권리가 보장돼요

2023 9월 8일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약속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학생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깨닫고 미래를 설계하는 배움의 주체로서,

- 온·오프라인 수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욕하는 등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 선생님의 정당한 수업 활동을 방해하여 선생님의 수업권, 나아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순간적인 충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교의 재물을 부수고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대화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사이버 명예훼손)를 하지 않습니다.
- 성(性)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선생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지 않습니다.
- 긴급하지 않은 일로 밤늦게 선생님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지 않습니다.
-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시는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생활화합니다.



학부모

학교는 나의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학부모는 학교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학교에 위임한 주체로서,

-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의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전화나 문자, 학교홈페이지 민원서비스 등을 통하여 사전 약속을 하고 가급적 근무 시간 중 학교에 방문합니다.
-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를 방문한 경우에도 선생님이 수업 중이거나 업무 중일 때에는 잠시 기다렸다가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수업 중인 교실을 방문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긴급한 일이 아닌 경우 밤늦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선생님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인터넷 게시판, 단체문자,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학교나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교직원

동료 교직원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핵심 주체로서,

- 일상 업무 중에 교직원-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교직원 간 상호 존중의 언어생활을 항상 실천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교권보호책임관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는 즉시 피해 교원을 분리 보호조치하며 피해 교원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성(性)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평소 협력적·수평적 관계 형성을 통하여 교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하면 상호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학생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필요시 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도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학부모는 특별교육이수, 과태료 부과 및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민주시민 의식을 키워 나가도록 노력합니다.